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권역별 위탁·수행 〉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51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2210251)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권역별 위탁·수행(안 제135조제8항 후단 신설)	2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221025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30.
3. 회 부 일 : 2025. 5.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고, 검사 시 드론을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8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권역별 위탁·수행(안 제135조제8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⑦ (생략)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⑧ ----- ----- ----- ----- -----, 이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지역별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위탁·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6. (생략)	
⑨·⑩ (생략)	⑨·⑩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령¹⁾은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25kg을 초과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 등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경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항공안전기술원의 운영세칙²⁾에 따르면 2년마다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함.

1)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2)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의 승인) 법 제124조 및 규칙 제305조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항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제16조(안전성인증서 발급 등) ②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안전성인증을 위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드론 인증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드론 인증센터의 경우 인천에 1개소가 구축되어 있음.

【 드론 인증센터 】

- 목적: 드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증 인프라 및 인증체계 구축
- 위치 : 인천 서구 정서진로194-2
- 규모: 운영시설(연면적) 4,534 m²
- 실내시설: 인증시험 및 사무시설*
 - * A동(안전성인증검사장), B동(복합환경챔버), C동(전자파적합성챔버)
- 실외시설: 비행시설*
 - * 활주로(200m x 10m), 헬리패드(2면 : 20m x 20m), 비행부스(2개)
- 드론인증센터는 드론전용 공역 내* 위치하여 비행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안전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UA 62)내 위치

< 드론인증센터 전경(수직 이착륙장 및 활주로) >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성인증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약 3개월, 평시에는 약 3주의 기간을 대기하여야 함.

【 드론 안전성인증 현황 】

(단위: 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년	55	79	102	110	109	105	93	74	73	15	21	64	900
'21년	95	165	382	430	269	391	381	323	243	257	325	200	3,461
'22년	230	196	268	280	485	514	336	304	133	85	126	106	3,063
'23년	219	277	517	429	564	646	495	307	208	169	402	213	4,446
'24년	261	378	408	520	676	739	820	534	54	79	188	316	4,973
계	860	1,095	1,677	1,769	2,103	2,395	2,125	1,542	711	605	1,062	899	16,843

※ 연간 500대 이상 인증 규모의 증가 추세

(‘22년의 경우 제도개선을 통한 인증유효기간 1→2년 증가로 일시 감소 이후 증가세)

자료 : 국토교통부

특히, 지역별 드론 안전성인증 신청대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외에도 많은 안전성인증 수요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지역별 드론 안전성인증 신청대수 】

(단위: 대)

구분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제주	계
'20년	350	59	376	115	-	900
'21년	2,048	606	680	125	2	3,461
'22년	1,505	706	700	139	13	3,063
'23년	2,941	760	628	109	8	4,446
'24년	2,786	915	1,085	169	18	4,973
계	9,630	3,046	3,469	657	41	16,843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안전성인증 업무를 권역별로 위탁·수행하도록 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2023년 3월부터 정비능력이 확인되어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으면, 항공안전기술원 방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³⁾ 하여 현재 지역별로 지정된 정비업체(7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5년 말까지 5개 업체에 대한 지정이 추가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정비능력확인업체 지정현황 】

권역	현재 (운영중)	예정 (추진중)	소계 ('25년 연말 예상)
호남권역	3 개	1 개	4 개
영남권역	1 개	2 개	3 개
충청권역	1 개	1 개	2 개
수도권역	2 개	1 개	3 개
총계	7 개	5 개	12 개

※ 추진 중인 업체는 현재 기술원이 컨설팅,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 중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하여 인증기관 방문 빈도 감소 및 드론 운영자의 운송비용 등의 경비 부담 완화 효과 등이 예상된다는 설명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확산 및 개선효과를 살펴보고 안전성인증 업무의 권역별 위탁·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항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제20조(안전성인증 신속 처리 절차) ① 모델별인증을 받은 형식의 초도인증의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지상검사 및 비행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안전성인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은 무인동력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또는 패러글라이더의 정기인증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지상검사 및 비행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별표1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정비업자의 정비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로, 정비업체를 통한 안전성인증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국토교통부는 금년 상반기 실적이 전년도 전체 실적에 이르는 수치로 제도가 확산 중이라는 설명임.

【 정비능력확인업체를 통한 인증 현황 】

(단위: 대)

구 분	수행 실적
'22년	해당 제도 시행 이전
'23년	251
'24년	339
'25년 6월 기준	259

자료 : 국토교통부

나. 국토교통부 의견

농업용드론 인증 신청 후 국민 불편이 있어 안전성 인증 소요기간 단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제도 도입 이후 안전성인증 검사 소요기간 단축 성과⁴⁾가 있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 인증검사소 운영 시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원(부지/시설/장비/인력) 투입 대비 실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4) 특히, 역량이 검증된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은 장치의 경우, 인증절차를 기존 서류검사, 상태 검사 및 시험비행(3단계) 방식에서 서류검사만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안전성 인증검사 기간이 신청에서 인증서 발급까지 1주 이내로 소요되고, 인증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현재 7개 지정정비업체를 연말까지 12개로 확대 추진 중이며, 개선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0